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(경감 2명, 경위 2명, 경장 8명, 순경 3명)을 증원하고,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하며,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

제35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 계 “12,538”을 “12,553”으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1,357”을 “11,372”로 하며, 총경 이하 “11,348”을 “11,363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2)의 업무란 중 “2개”를 “1개”로, 같은 호 정원란 중 “5명”을 “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지원과) ① (생 략)	제10조(운영지원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<u>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 ·</u> <u>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 · 관</u> <u>리</u>
8. (생 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제35조(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 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<u>7퍼센트</u>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 다.	제35조(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. ----- ----- <u>10퍼센트</u> -- ----- ----- 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 관(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필요 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	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

정원의 <u>7퍼센트</u>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 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<u>10퍼센트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2,538</u>	<u>12,553</u>	+15
경찰공무원 계	<u>11,357</u>	<u>11,372</u>	+15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1,348</u>	<u>11,363</u>	+15
·	·	·	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5